

고 성 군 환 경 기 본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432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9. 2.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97. 8. 1

고 성 군 수

나. 회부일자 : 97. 8. 4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97. 9. 2

2. 주요골자

가. 환경보전의 목적, 기본이념 및 사용용어를 정의(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)

나. 환경보전을 위하여 고성군, 사업자, 군민의 책무를 규정(조례안 제4조 내지 제6조)

다. 환경백서 발간(조례안 제7조)

라. 환경기본계획의 수립과 환경영향 검토(조례안 제8조, 제9조)

마. 환경오염원인 행위 및 환경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규제(조례안 제10조)

바. 군은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·유지관리 조치 강구(조례안 제11조)

사.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(조례안 제12조)

아. 자연환경보존, 환경정보의 공개, 교육·홍보·조사연구의 시행

(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6조)

자.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와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, 환경보전기금 설치
(조례안 제17조 내지 제19조)

차.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제협력의 노력(조례안 제20조, 제2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1990. 8. 1 법률 제4492호로 제정 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, 제32조 법제상의 조치에 의거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, 환경보전의 목적,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, 고성군·사업자·군민의 환경 보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 고성군은 환경분야에 대하여 타기관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환경부서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
- 답 : 환경과 과장 및 계장은 직제상 환경 및 행정직 복수직으로 되어있다.
앞으로 환경분야 직원의 여건이 조성되면 전문직을 보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.
- 문 : 조례안 제18조에 의한 환경보전 재정확보 방안은
- 답 : 조례가 제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재정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.

5. 토론 : 없음

6. 심사경과 : 97. 9. 2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